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뉴스통신에 관한 인용 법률 및 대상 변경〉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34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난뉴스통신에 관한 인용 법률 및 대상 변경(안 제10조제2항제6호) ...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6. 1. 9.

다. 회부연월일 : 2026. 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

Ⅲ. 검토의견

1. 재난뉴스통신에 관한 인용 법률 및 대상 변경(안 제10조제2항제6호)

개정안은 연합뉴스사의 업무 중 하나인 재난뉴스통신 업무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명칭과 대상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 (생략)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 -----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¹⁾로서 재

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

난뉴스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난뉴스통신 업무의 대상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2)에 따른 “재해”로 규정되어 있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상황에 대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뉴스통신 업무의 대상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3)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

4.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대외뉴스통신 업무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로써 재난뉴스통신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르면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피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재해”에는 ‘사회재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현행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명칭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되어 있어 재난뉴스통신 업무의 범위가 ‘자연재해’에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재난뉴스통신 업무에 관한 인용 법률의 명칭과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바, 이미 자연재난 외에 사회재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자연재해대책법」의 정의

규정 외에 여타 규정이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재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연합뉴스사의 재난뉴스통신 업무의 범위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80
